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방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심 사 보 고 서

2025년 6월 10일
의 회 운 영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5월 29일, 운영회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2025년 6월 10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의 「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」에서 제시한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여, 방청의 제한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경호 대상에 위원회 회의장을 추가(안 제2조)
- 방청의 제한 사유 고지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2조)
- 방청인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퇴장 명령 근거 규정 신설(안 제14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김하영

나. 검토의견

1) 제정 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의 「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」에서 제시한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여, 방청의 제한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

2) 주요 내용

- 가) 경호 대상에 위원회 회의장을 추가(안 제2조)
- 나) 방청이 제한되는 사유(안 제11조)
- 다) 방청의 제한 사유 고지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2조)
- 라) 방청인의 준수사항(안 제13조)
- 마) 방청인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퇴장 명령 근거 규정 신설(안 제14조)

3) 검토 의견

- 본 개정 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「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」 제도개선 권고(2024. 8. 5.)에 따라 방청 제한 시 그 사유와 근거 안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자 발의된 안전임
- 본 규정안에 대한 개정을 통해 금천구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
- 검토결과,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, 의회 회의장에서의 방청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